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2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3년 3월 16일 회부
- 상정일자: 제2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3년 3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축산농기계과장)

가. 제안이유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하며,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임대료 산정 명료화, 임대료 감면대상을 확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농작업 대행사업의 면적 제한(안 제8조)
- 2) 임대계약 취소에 따른 배상 및 미반환 농기계의 회수 규정 신설(안 제12조)
- 3) 임대료 산정 및 납부 수단 확대(안 제13조)
- 4)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신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안 제14조)
- 5)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본 개정안은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 및 임대를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배사항 등은 없으며,

우리 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임대 활성화 및

농업인 경제적 부담 경감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소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 및 위치와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를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에 지소를 설치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경운, 정지”를 “경운정지, 두둑성형(골), 비닐피복 등”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를 “농경지로 최소면적은 330㎡ 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4항 후단 중 “있다”를 “있으며 작업량이 적고 사용시간이 불규칙한 농기계(정전기, 색채선별기 등)는 1시간을 기준으로 임대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임대농기계는 임차인이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톤 트럭에 적재할 수 없는 대형 기종에 한정하여 운송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군수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에도 농기

계를 반환하지 않으면 농기계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용 계좌에”를 “납부고지서, 카드결제, 전용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① 임대료 및 운송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자기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0 퍼센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전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감면 대상임을 입증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임대사업소의”를

“임대사업의”로,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를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축산농기계 과장이 된다.

1.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단체 대표

2. 농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20조제3호 중 “관해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기계팀장이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농기계 구입금액 기준 임대료(제13조제1항 관련)

1. 농기계 임대료 (단위 : 원/일)

농기계 구입금액	임대료	비 고
1) 100만원 미만	9,000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000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3,000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7,000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0,000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4,000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28,000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2,000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35,000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0,000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56,000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73,000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94,000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11,000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36,000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58,000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66,000	
18) 5,000만원 이상	179,000	

2. 농기계 운송료

구 분	금 액(편도)	산 출 기 준
운송료	20,000원	1회 편도 요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치) 평창군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u>지소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 및 위치와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u></p>	<p>제2조(위치) ----- ----- ----- --- <u>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에 지소를 설치 할 수 있다</u></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농작업 대행사업”이라 함은 군 또는 그 업무를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단체를 포함한다)가 농업인으로부터 위임받아 농기계로 <u>경운, 정지</u> 농작업을 대신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p> <p>3.·4. (생 략)</p>	<p>제3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u>경운정지, 두둑성형(골), 비닐피복 등</u> ----- -----.</p> <p>3.·4. (현행과 같음)</p>
<p>제8조(농작업 대행사업 대상자) 농작업 대행사업 대상자는 군에 있는 농경지에서 농작업을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이 경우, 농업인은 가족(주민등록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p>	<p>제8조(농작업 대행사업 대상자) ----- ----- ----- ----- ----- ----- -----</p>

제12조(임대계약 취소) (생략)

<신설>

<신설>

제13조(임대료 및 대행료) 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에 따른다.

② (생략)

③ 임대료 및 대행료 납부는 신청인이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전용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4조(임대료 감면)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

제12조(임대계약 취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에도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으면 농기계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임대료 및 대행료) ① 임대료 및 운송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납부고지서, 카드결제, 전용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임대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

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이 경
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
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전액을 감면한다.

<신 설>

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
인이 자기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0퍼센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
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
자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한 독립유공자

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면신청서에 감면 대상

임을 입증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 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구성) ①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농업기계 또는 농업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농업인단체 임원, 여성농업인 등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 설>

<신 설>

제18조(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① ----- 임대사업의 -----
-----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신 설>

제2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2. (생 략)
3. 그 밖에 임대사업·대행사업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21조(위원회 운영) ① ~ ③ (생 략)

<신 설>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축산농기계 과장이 된다.

1.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단체 대표

2. 농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20조(위원회 기능) -----

- 1.·2. (현행과 같음)
3. -----
-- 필요한 -----

제21조(위원회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기계팀장이 된다.

관계법령

【농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연락처	(033) 330 - 1306